

양부모가계 대 한부모가계의 경제적 빈곤실태

김 학 주*

1. 서 론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에서 가족은 복지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개별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련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요보호 가족의 소득 및 의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문제의 심각성을 예방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가족형성의 출발점인 혼인을 기피하는 독신자가정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 경향 또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현재 연간혼인건수는 30만 6600건으로 1990년의 39만 9300건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혼인율은 인구 천 명당 6.4명으로 1990년의 약 6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2002년의 연간 이혼건수는 14만 5300건으로 1990년의 4만 5700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혼율은 인구 천 명당 3.0명으로 1990년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2).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양부모가족이 아닌 1인 가구, 여성 가장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가족형태가 점차 확대되어 전체 가구 중 약 41%에 달하며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8.9%, 90년 7.8%, 95년 8.6%, 2000년 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03).¹⁾ 즉 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아직까지 많긴 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가구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은 크게 이혼, 별거, 사별,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여성가구가 증가하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급증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03; 이성림, 2004).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가족유형 중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확산현상은 미래의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특히 주목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의 증가현상이 배우자의 사별보다는 이혼이나 별거, 유기 등에서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 성인부모의 부재는 가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한부모가족 대신 그동안 편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결손가족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한부모가족은 결손의 부정적인 의미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하기 위해(한가위할 때의 “한”과 같은 의미로 하나라도 충분하고 가득하다는 뜻)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이때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 남성 한부모가족,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부른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정 내 경제적 빈곤과 자녀 보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혼이나 사별은 해당 가구의 소득 감소 또는 상실의 문제를 불러오게 되어 여성 또는 남성 가구주로 하여금 부족한 소득보충을 위해 노동시장에 나서게 만든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편모가족의 77.4%가 양부모가족에서 편모가족으로 바뀔 때 따라 경제적 소득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숙 외, 2000). 이때 성인부모, 특히 모의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저소득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빈곤의 장기화 문제는 이들 집단의 주택문제와 의료비 관련 본인부담의 과중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현재 전체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63.5%이며 임시직이 29.1%, 일용직이 13.1%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여성근로자의 1/2를 넘고 있다는 보고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통계청, 2002).

미래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녀보육과 소득보장의 부담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양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소득, 소비지출 및 경제적 빈곤상태를 분석하고 이들 가계의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공·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혼인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소득, 소비지출, 자산, 부채비중(부채/자산)과 부채부담률(부채상환액/소득)등의 지표를 통해 경제적 빈곤상태를 가계유형별로 파악하여, 셋째,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이들 가계의 빈곤지위와 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들 가계에 대한 복지정책의 함의를 논하기로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최근의 높은 이혼율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문제는 이들 가족을 위한 공공정책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²⁾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에 관해 김미숙 외 5인(2000)은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전환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며 그 다음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육비 부족이 절대적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중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남편의 상실로 인해 주 수입원인 소득이 1/3에서 반 정도까지 감소되거나 상실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1999년 저소득 재가 모자복지 대상 여성 한부모가족들 중 88%가 취업을 한 상태였으나, 일용직이 47.5%나 차지하는 등 대체로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

2) 이혼사유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1985년에는 3.0%였으나 2002년에는 13.6%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3).

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 81.6%는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복지수혜비율이 가장 높았다.

옥선화 외 2인(2001)은 이와 일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첫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생산 및 서비스직,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빈곤층 여성가장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외환위기 이후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 소외감 수준 및 복지제도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여성가장이 된 뒤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힘든 문제는 자녀 양육 및 교육으로 나타났다. 빈곤 여성가장의 84.9%가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생활비의 30% 이상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자녀 양육 및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여성가장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편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근로경험과 관련하여 고순이(1990)의 연구는 수원시의 2개 구청을 통하여 빈곤모자가정의 소재를 파악하고 경제문제, 주택문제, 건강문제, 교육문제, 정서문제 영역에서 이들의 욕구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 빈곤 모자가계의 주요수입원은 모의 근로소득인 반면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공부조대상 수준이지만 공적인 경제지원을 받는 가계는 극소수임이 밝혀졌다. 9년 뒤, 서울시 소재 모자보호시설에 거주중인 24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희선(1998)의 연구에서도 여성 가장의 대부분이 파출부, 노점상 등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소득은 약 50만원 내외와 함께 약간의 생계비 지원을 받아 빈곤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2 정도는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녀교육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순이(1990) 연구와 비교하여 생활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박재규(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계의 열악한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25.1%)이 남성가구주 가구(14.1%)에 비해 매우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차별로 인한 성별 임금격차와 직종분리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최순화(1999)의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가구주 성별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남성 한부모가족보다 소득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계빈곤에 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겪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변화순 외, 2002; 김영란, 1998, 옥선화 외, 2001; 김윤정, 2000). 옥선화 외(2001)의 연구에서 약 60%의 여성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김미숙 외(2000)의 연구에서도 저소득 편모가족의 70%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여성 한부모가족의 소비지출에 있어 가구 총소득대비 자녀 양육과 교육항목에 관한 지출이 다른 유형의 가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양세정·이윤금, 1999). 셋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리한 취업조건과 낮은 교육수준에 기인하

는 인적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비정규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모자 가족의 단순노무직 비율이 45.4%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보조금도 여성과 아동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정도의 액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화 외, 2002). 박영란·강철희(1999)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모자가정 가구주중에 고졸이하의 저학력자의 비율이 54.6%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주로 여성 한부모가족에 집중된 연구경향은 남성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최근의 다양한 유자녀가족간 경제적 복지의 편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성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편향성은 이들 가계들의 경제적 복지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지출패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계의 빈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혼인유형(이혼/별거, 사별, 미혼, 결혼)에 따른 편차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이다(김미숙 외, 2000; 박경숙, 2001). 즉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실태는 혼인유형, 취업형태, 자녀수 등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넷째, 한부모가족의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전소득이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박경숙, 2001). 박영란과 강철희(1999)의 연구의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공적소득이전만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득이전효과의 크기를 파악하기 힘들며, 주인숙(1998)의 경우 이전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어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에 관한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제6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2003)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첫째, 노동패널조사는 가구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활동참여 및 소득, 지출, 부채 등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총 5000여 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 이래 6차에 걸친 조사 자료가 이용가능하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둘째, 자료수집의 대상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셋째,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값이 항목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최근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노동패널자료만의 강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자녀가구의 총 표본 1866수로 가구주의 혼인상태에 따라 결혼 1834, 이혼/별거 85, 그리고 사별가구 84가구로 나타났다.³⁾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기법으로는 먼저 혼인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가구주의 성별과 연령, 교육 수준, 취업형태, 연령대별 자녀수, 가구원수, 거주형태, 소득원천별 소득수준), 가구 소비지출내역 및 기타 경제적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론통계방법으로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빈곤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지표를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구소득과 함께 소비지출을 주요한 지표로 사용하여 혼인유형에 따른(미혼, 결혼, 이혼/별거, 사별) 항목별 소비지출내역과 기타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자산과 부채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가계소비자의 선택을 반영하고 있어 가구의 경제적 빈곤여부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가구소득을 이용한 빈곤여부의 결정은 소득을 가진 청장년층 남성가구주 가계의 빈곤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신, 여성이나 기타 비소득자가구주를 포함한 가계의 물질적 복지수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구의 빈곤실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의 고려는 필요하다(Bane & Ellwood, 1986). 하지만 혼인유형별 가계의 소비지출을 파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가구원수가 가구별, 집단별로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가구는 일반적으로 결혼가구보다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에 명목가구소득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제시한 가구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 즉,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가중치로 부여하였으며 가중치가 부여된 지출액을 산출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가구소득, 월 소비지출/소득, 총 부채, 부채비중(자산/부채), 부채부담률(부채상환액/소득)등의 지표들이 사용되었다. 가계의 부채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들로는 가계 총부채의 규모, 부채비중(금융부채액/금융자산), 월평균 상환액, 부채부담률(부채상환액/소득)등이 사용될 수 있다(성영애, 2000). 그러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부채의 증가를 함께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부채부담률이나 부채비중이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김학주, 2004). 가구소득은 1) 근로소득, 2) 부동산과 동산소득을 포함한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원으로 3) 공공부조와 4) 사회보험, 5) 사적소득이전, 6)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가구의 빈곤율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과 소비지출을 함께 이용하였다. 즉 1) 빈곤선 이하의 절대빈곤층 파악에 유용한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소득이 100%이하인 경우와(소득기준 절대적 빈곤), 2) 소득대신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빈곤가구로 규정하였다(소비기준 절대적 빈곤).

한편 추론통계방법으로는 가구의 빈곤여부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소득에 따른 빈곤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인적자본 변수), 가구원 수, 자녀수(0-5세 미만, 5세-15세 미만, 15-18세), 거주형태, 가구주 및 가구구성원들의 근로소득, 사회보험 급여, 공·사적소득이전규모(빈곤감소 변수)등이

3) 미혼 한부모가구의 경우 2 case에 불과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IV. 분석결과

1. 혼인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 양부모 및 한부모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03년)

(단위 : %, 만원)

		전체	양부모가구	한부모가구		
			결혼	이혼/별거	사별	
구성비율		100	91.56	4.24	4.19	
		Percentage(%)				χ^2 (prob)
가구주 성별	남자	93.40	98.09	53.36	24.49	2357733(<0.0001)
	여자	6.60	1.91	46.64	75.51	
가구주 연령	<30	2.88	2.96	3.65	0.00	805505(<0.0001)
	30~39	36.47	38.05	25.44	10.76	
	40~49	49.52	49.94	57.64	31.09	
	50~59	6.58	6.05	10.22	15.32	
	≥60	4.55	2.99	3.05	42.83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84	14.57	30.42	56.24	307502(<0.0001)
	고등학교	42.68	42.87	47.47	33.29	
	대학교 이상	40.48	42.56	22.11	10.47	
가구주 취업상태	상용직	52.44	54.00	38.16	30.60	295529(<0.0001)
	임시직	2.48	2.43	5.07	1.16	
	일용직	5.60	5.32	10.56	7.11	
	고용주	11.83	12.38	8.39	2.36	
	자영업	14.95	15.16	12.50	12.57	
	미취업	12.70	10.71	25.31	46.21	
입주형태	자가	57.03	57.79	44.24	52.44	72760.664(<0.0001)
	전세	29.45	29.80	26.79	23.87	
	월세	8.23	7.68	16.28	12.84	
	기타	5.28	4.72	12.69	10.85	
		Mean				F(prob)
가구주 연령(만)		42.10	41.49	42.81	55.53	120.93(<0.0001)
가구원 수		4.06	4.11	3.30	3.54	51.66(<0.0001)
5세 미만 자녀수		0.31	0.32	0.19	0.16	5.41(0.0045)
5~15세 미만 자녀수		1.05	1.07	0.87	0.80	5.84(0.003)
15~18세 자녀수		0.39	0.38	0.54	0.63	8.79(0.0002)
(1) 근로소득(만원)		251.16	257.50	164.93	167.82	18.53(<0.0001)
(2) 사회보험(만원)		1.26	1.12	0.00	5.95	7.64(0.0005)
(3) 정부보조(만원)		8.10	4.79	48.65	44.08	30.78(<0.0001)
(4) 사적이전소득(만원)		58.20	59.12	48.53	46.41	0.04(0.9647)
(5) 자산소득(만원)		15.10	15.85	8.98	3.80	0.60(0.551)
(6) 기타소득(만원)		11.85	12.45	7.62	2.16	0.29(0.7466)

자녀를 가진 가구의 혼인유형은 크게 결혼가구(양부모가구), 이혼 또는 별거가구, 사별가구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1>은 각 집단에 속한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대부분(91.56%)이 양부모가구인 반면에,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가구는 4.2%,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는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양부모가구 중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98.1%에 달하였으나 이혼/별거의 경우 53.4%, 사별의 경우는 24.5%로 나타나 여성 한부모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주의 연령에 있어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공히 크나 평균값을 비교했을 경우 사별집단이 약 55.5세로 타 가구에 비해 10세 이상 높았고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75.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한부모가구내 가장의 교육수준이 양부모가구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졸업이하의 경우 양부모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취업 시 근로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주요 인적자본 요인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한부모가구의 교육수준은 이혼 또는 사별 이전부터 빈곤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양부모가구와 한부모가구, 그리고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혼인유형에 따라 이혼/별거와 사별의 경우 처음부터 매우 상이한 집단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형태에서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별거 및 이혼가구의 미취업 비율은 25.3%, 사별가구는 46.2%로 매우 높았으나 양부모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10.7%로 약 90%의 취업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취업비율을 보면 18세 이하 자녀를 둔 이혼/사별가구의 경우 양부모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혼인유형에 따른 소득원별 가구소득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근로소득이 총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혼인유형과 관계없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부모가구(이혼/별거 및 사별)의 경우 가구총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율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의 경제적 빈곤실태

가. 가구소득, 자산, 및 부채

아래 <표 2>은 양부모 및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빈곤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양부모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은 320.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소득의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특히 월 부채부담액이 21.95만원이며 부채부담율의 경우 0.07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주 가계의 총 가계소득은 양부모 및 여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약 70% 수준에 불과하였던 반면 소득대비 소비지출은 평균 1.02로 높은 소비성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양부모가계가 한부모가계에 비해 높은 월 부채상환액과 부채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등 저축과 부채 모두에서 제도금융권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실태

(단위 : 만원)

혼인유형	양부모가구	남성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전체	별거/이혼	사별	전체	별거/이혼	사별
가구소득	320.60	226.11	225.11	228.44	327.29	319.65	271.15
소비지출/소득	0.96	1.02	0.91	1.28	0.98	0.96	1.15
총 자산	3503.85	1187.78	572.61	2659.86	3677.48	3185.31	2158.07
총 부채	3015.11	1493.68	1366.20	1783.34	2943.39	2782.52	2668.22
월 부채 상환액	21.95	6.50	6.38	6.77	22.10	15.42	15.48
부채부담률	0.07	0.03	0.03	0.03	0.07	0.05	0.06

나. 빈곤율과 공·사적 이전소득의 효과

<표 3> 양부모 및 한부모 가구빈곤율

(단위 : %)

	전체	이혼/별거	사별
양부모+한부모가구			
빈곤율 (소득기준)	10.93	-	-
빈곤율 (소비기준)	9.57	-	-
양부모가구			
빈곤율 (소득기준)	9.25	-	-
빈곤율 (소비기준)	7.71	-	-
남성 한부모가구			
빈곤율 (소득기준)	19.47	17.43	24.13
빈곤율 (소비기준)	22.72	27.13	12.69
여성 한부모가구			
빈곤율 (소득기준)	37.23	32.25	40.44
빈곤율 (소비기준)	36.4	19.91	47.03

위의 <표 3>은 혼인유형에 따른 빈곤가구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양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빈곤율은 약 9.25%이었으나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7.71%로 약간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이혼 또는 별거중인 남성가구의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이 27.13%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비교 시 약 10%point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소득기준과 소비지출기준간의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이 해당 집단의 보다 높은 소득 대비 물질적 욕구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인지는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사별한 남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소득 기준 빈곤율(24.13%)의 약 절반인 12.69%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별거 중인 남성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외의 전체적인 가구 자산 및 부채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표 2>에서 가구 총소득대비 지출비율이 1.28로 높은 수치를 보고했다). 한편 배우자와 이혼 또

는 별거중인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이 37.23%이었는데 이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19.91%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표 4> 공·사적 이전소득의 가계 빈곤감소 효과

(단위 : %)

		소득이전전(1)*	(1)+사적소득 이전(2)	(1)+공공부조(3)	(1)+사회보험 이전(4)	(1)+전체소득 이전(5)
		빈곤율(%)				
양부모가구		11.49	10.89	9.73	11.31	9.25
남성 한부모 가구	전체	29.02	25.51	22.98	29.02	19.47
	이혼/별거	31.17	26.11	22.48	31.17	17.43
	사별	24.13	24.13	24.13	24.13	24.13
여성 한부모 가구	전체	49.98	39.15	46.74	49.31	37.23
	이혼/별거	43.14	35.43	37.14	43.14	32.25
	사별	54.39	41.54	52.92	53.28	40.44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율 변화(%)				
		(1)에서 (2)	(1)에서 (3)	(1)에서 (4)	(1)에서 (5)	
양부모가구		-5.2%	-15.3%	-1.6%	-19.5%	
남성 한부모 가구	전체	-12.1%	-20.8%	0.0%	-32.9%	
	이혼/별거	-16.2%	-27.9%	0.0%	-44.1%	
	사별	0.0%	0.0%	0.0%	0.0%	
여성 한부모 가구	전체	-21.7%	-6.5%	-1.3%	-25.5%	
	이혼/별거	-17.9%	-13.9%	0.0%	-25.2%	
	사별	-23.6%	-2.7%	-2.0%	-25.6%	

주 : * 소득이전전 소득(1)은 공·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내 근로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의미한다.

<표 4>은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빈곤율과 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가구주 성별 및 혼인유형 별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이전이 전혀 없을 경우 양부모가구의 빈곤율 11.5%에 비해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가구유형별 차이는 있으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제적 빈곤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을 가구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약 50%에 달해 외부로부터 소득이전이 없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별거 및 이혼여성이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을 제외했을 때 이혼/별거에 비해 10%이상 높은 빈곤율을 보였는데 이는 주변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해당 가구에 매우 중요한 빈곤탈출요인을 시사한다. 남성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에 비교 시 두 배 이상 높은 약 29%의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으나 이는 여성가구에 비해서는 20%point 정도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 이혼/별거중인 집단이 사별집단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개별 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여성 한부모가구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사별과 이혼/별거집단이 각각 -23.6%와 -17.9%의 빈곤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남성 한부모가구 중 사별집단의 경우 사적소득이전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집단에 대한 사적소득이전이 매우 미흡함을 시사한다. 공공부조의 빈곤감소효과는 이혼 또는 사별한 남성가구에서 -27.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혼인유형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내역

<표 5> 혼인유형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항목: 가구원수를 보정한 경우

(단위 : 만원)

지출항목	전체(%)	결혼(%)	이혼/별거(%)	사별(%)
식비	18.68(15.93)	18.96(15.76)	15.12(17.17)	15.69(20.39)
외식비	3.74(3.19)	3.88(3.23)	2.90(3.30)	1.26(1.64)
공교육비	5.00(4.26)	5.03(4.18)	5.20(5.91)	4.10(5.33)
사교육비	15.60(13.30)	16.09(13.38)	12.14(13.78)	7.47(9.71)
차량유지비	9.40(8.02)	9.78(8.13)	5.04(5.72)	4.91(6.38)
주거비	7.31(6.23)	7.31(6.08)	8.20(9.30)	6.43(8.35)
경조사비	3.30(2.81)	3.37(2.80)	2.12(2.41)	2.80(3.64)
보건의료비	2.39(2.03)	2.39(1.98)	1.63(1.85)	3.20(4.16)
문화비	1.85(1.58)	1.93(1.60)	1.06(1.21)	1.08(1.15)
내구재	1.64(1.40)	1.72(1.43)	0.77(0.87)	0.57(0.75)
통신비	6.44(5.49)	6.54(5.34)	5.34(6.06)	5.12(6.65)
용돈	10.80(9.21)	11.04(9.18)	7.97(9.05)	8.12(10.56)
피복비	3.17(2.70)	3.27(2.72)	1.88(2.14)	1.95(2.53)
기타	2.00(1.71)	2.06(1.71)	1.50(1.70)	1.12(1.46)
소비지출	91.15(77.71)	93.27(77.54)	70.83(80.39)	62.42(81.13)
비소비지출(저축)	26.14(22.29)	27.02(22.46)	17.27(19.61)	14.52(18.87)
총지출	117.29(100.00)	120.29(100.00)	88.10(100.00)	76.95(100.00)

<표 5>는 혼인유형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 수준 및 기타 경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출비목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를 보정한 뒤에도 양부모가계가 편모가계보다 많은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부모가계에 비해 양부모가계의 높은 소득이 구매력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지출비중 관련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식비, 사교육비, 그리고 내구재 지출에 있어 사별가계는 양부모가계에 비해 적었고 대신 식비, 보건의료비, 그리고 주거비 지출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혼/별거가계의 경우에는 양부모가계(결혼가계)에 비해 내구재의 비중이 적었으며 보건의료비의 경우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반면 가구원수 보정 실 지출액은 1.63만원으로 양부모가

계의 2.39만원에 비해 약 30%정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부모가계의 가구원 수 보정 저축액 또한 한부모가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지출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4.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에 따른 빈곤결정에 관한 회귀분석

<표 6> 가구소득에 따른 빈곤결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빈곤=1, 비빈곤=0)

	결혼		이혼/별거		사별	
	Coefficient	OR	Coefficient	OR	Coefficient	OR
intercept	-2.0165		2.8801		-2.3046	
가구주 연령	0.045***	1.046	-0.050***	0.950	0.074***	1.077
여자	0.8917***	2.439	-1.472***	0.229	0.632***	1.883
(남자)						
중학교이하	0.2161***	1.241	0.928***	2.532	-1.659	0.190
고등학교	0.0257***	1.026	1.007***	2.740	-1.285	0.277
(대학 이상)						
상용직	-0.543***	0.581	0.171***	1.187	-0.531***	0.587
임시직	-0.406***	0.666	1.553***	4.730	0.146***	1.158
일용직	-0.200***	0.818	-0.226***	0.797	0.252***	1.287
고용주	-0.518***	0.595	0.504***	1.656	-1.182***	0.307
자영업	-0.279***	0.757	-0.717***	0.488	0.195***	1.216
(미취업)						
5세 미만 자녀수	-0.060***	0.942	-2.323***	0.098	-2.747***	0.064
5~15세 미만	-0.041***	0.96	-0.438***	0.646	-0.101***	0.903
15~18세	0.143***	1.154	0.304***	1.355	-0.070***	0.932
전세	0.415***	1.514	0.495***	1.641	-0.268***	0.765
월세	0.889***	2.433	1.166***	3.211	0.566***	1.762
기타	0.782***	2.185	-0.404***	0.668	0.519***	1.681
(자가)						
사회보험	-0.001***	0.999	0.029***	1.030	-0.033***	0.967
공공부조	-0.001***	0.999	0.006***	1.006	0.004***	1.004
사적이전소득	0.001***	1.000	0.007***	1.007	-0.001***	0.999
가구원수	0.079***	1.083	0.345***	1.412	0.261***	1.299
Model x2	1927281		201409.4		301019.4	
-2 Log L	9466204		655951.2		1201679	
DF	20		20		20	
N	3099		181		333	

OR=Odds ratio, p <.001***

위의 <표 6>은 가구소득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빈곤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빈곤=1, 비빈곤=0) 공·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하여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가구내 18세 이하 자녀수, 주거형태) 및 가구주 인적자본 특성(연령, 교육수준, 취업형태)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먼저 양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OR=1.046), 가구주가 여성일수록(2.439),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학교 이하:OR=1.241, 고등학교:OR=1.026, 기준변수: 대학교육 이상) 가구가 빈곤

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 미취업가계에 비해 빈곤에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용직과 임시직의 경우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상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능성을 보였다. 18세 이하 자녀수와 관련하여 15~18세 사이의 자녀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15.4% 씩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기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혜택은 가구의 빈곤탈출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 후 효과의 크기는 각각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별거가계의 빈곤여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가구주 연령 및 성별 변수의 경우 양부모가구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경우 낮은 교육수준이 기준변수인 대졸 집단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의 높은 빈곤에 처할 확률을 보였는데(중학교 이하: OR=2.542, 고등학교: OR=2.740), 이는 양부모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거주형태와 관련해서는 월세를 내는 이혼가구의 경우 자가와 비교 시 빈곤에 처할 때 매우 높은 확률을 보이고(OR=3.211) 있다. 소득이전의 종류와 관련하여 사회보험, 사적이전소득, 공공부조 순으로 이혼/별거가구의 빈곤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되었는데 결과대로 해석하게 되면 사회보험혜택 만원 증가 시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3%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전소득액의 증가분이 빈곤확률을 높이는 것이기 보다는 경제적 빈곤에 처했을 때 이전소득의 지급규모가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빈곤에 대한 소득이전은 빈곤이전이 아닌 발생이후에 지급되어진다). 사별가계의 경우에도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가구의 빈곤위험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혼/별거 집단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양부모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소득, 소비지출, 빈곤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도출했다. 첫째, 동일한 가구주 성별을 가진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혼인유형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부모가구의 발생원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가구의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시 소득기준 빈곤율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구주의 성별과 혼인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남성 한부모가구 중 사별가구의 경우 빈곤율의 변화에 미치는 공·사적 소득이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로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 편모가계에만 주어지는 복지수혜에만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넷째, 공적소득이전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이는 성숙되지 못한 공적지원체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녀양육과 생계보장이라는 두 가지 난관에 처한 한

부모가장들을 위한 다양한 사교육비 및 보건의료비 절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의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섯째,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빈곤은 소득 및 소비 양쪽에서 발생하며 이는 한부모가구 발생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한편 한부모가구의 소비지출의 감소 정도는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부모가계 중 많은 경우 전체 지출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양부모가계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지출을 줄일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기정 · 이무영 · 김영희(2002).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체계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 고순이(1990) 도시빈곤 모자가정 실태와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 김미숙 · 박민정 · 이상현 · 홍석표 · 조병운 · 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영란(1998). 빈곤의 여성화, 사회복지, 세계화. 여성과 사회 9: 64-79.
- 김영화 · 조희금(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김오남 · 김경신(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07-124.
- 김윤정(2001).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 김학주(2004).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109-131.
- 박경숙(2001). 저소득 모자가정 빈곤실태와 자활대책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7-98.
- 박영란 · 강철희(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 박재규(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변화순 · 송다영 · 김영란(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2.
- 성영애(2000). 가구주 직업이 가계부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9(1): 21-32.
- 옥선화 · 성미애 ·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 이성림(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분석 22(1):153-165.
- 장혜경 · 송다영 · 김영란 · 김정훈(2001).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정책자료
- 조희선(1998). 저소득 모자가정복지의 실제와 지원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창간호: 199-231.
- 주인숙(1998). 편모가정의 가계경제상태 평가. 자연과학연구 5: 1-13
- 최선화(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87-211.
- 통계청(2002)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여성개발원(2002) 여성통계연보.

Bane, M. J. and Ellwood, D.(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1, No.1, pp. 1~23.